

2019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19년 식품안전정책 주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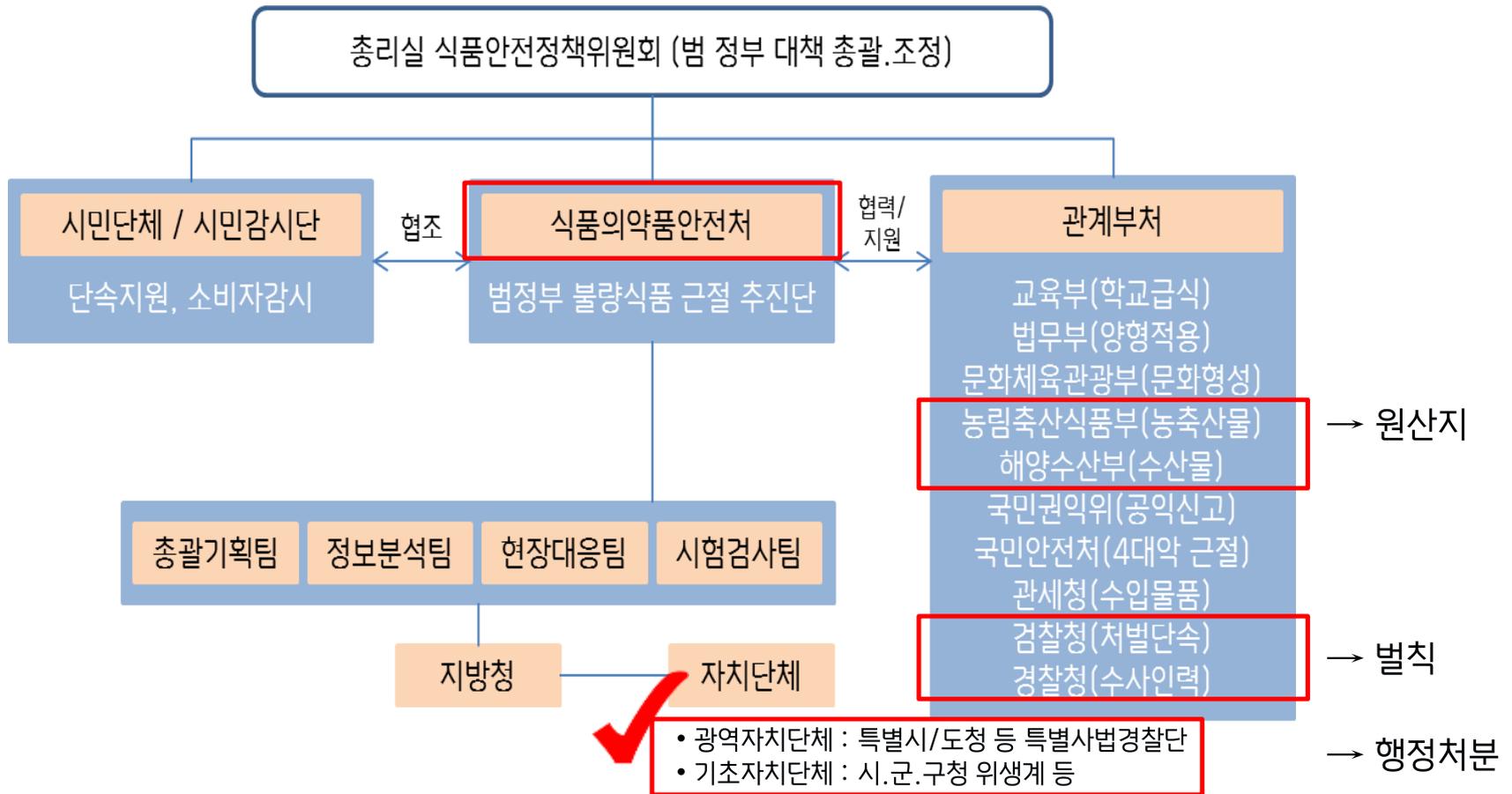
“2019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Table of Content

1. '19년 식품안전관리 목표 및 주요 시책
2.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3. 주요 법령 변화
4.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5. 기타 참고사항

“ '19년 식품안전 정책 추진 전략 ”

범정부 불량식품 대응 조직



(출처 : 불량식품근절추진단)

“ '19년 식품안전 정책 추진 전략 ”

주요 식품안전 법령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
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
관리특별법

식품표시
광고법

어린이식생활안
전관리특별법

위생용품
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
진흥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
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기타 부처

상표,특허법
(특허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위)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계량에 관한
법률
(산자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위)

제조물책임법
(공정위,법무부)

소비자기본법
(공정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자부)

대외무역법
(산자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에
관한 법률
(산자부,중기)

“ '19년 식품안전 정책 추진 전략 ”

주요 식품안전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식품.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 '19년 식품안전 정책 추진 전략 ”

식품안전관리 정책 추진 전략

비전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책임지는 국가 구현”

목표

“미래.환경변화 대비 식품안전 기반 조성”



핵심전략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불시평가 확대 및 one-strike out제 강화 ○ 해외제조업소 현지 실사 및 통관검사 강화 * 국외 비식용 수산물 특별위생관리식품 지정 · 운영 ○ 아동급식 가맹 음식점 위생안전시설 개선 사업 추진 ○ 국가 잔류물질프로그램의 제도화 및 안전한 계란 유통체계 확립 *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실시, 계란 출하전 검사 강화
	체계적이고 끊임없는 유통관리 환경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간편식, 배달앱, 온라인 판매제품 등 소비트렌드 반영 검사 강화 ○ 면세점 내 판매식품 및 수입식품 전문 판매점 안전관리 강화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급식의 공공성 제고 ○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및 이력추적대상 품목 확대
	안전한 먹을거리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자에게 실증 책임을 부여하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시행 ○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식품안전정보 지속 제공 ○ 식중독 원인 미생물 위해평가 및 식중독 원인체 유전자 DB 확보

“ '19년 식품안전 정책 추진 전략 ”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변경사항

법을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3월~)
- 즉석밥 · 국 등 즉석섭취식품 등의 HACCP 의무적용을 차질없이 추진 (지속)
- 임산부 · 환자용 식품에 이력추적 적용 확대 (지속)
- 난각 표시기준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계란의 선별·세척 유통을 위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식용란수집판매업체에 자가품질검사 의무 부여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사항

- 기획점검 및 위생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
 - 온라인 전용 슈퍼마켓, 무인점포, 프리마켓 등
 - PC방, 스크린골프장 등 위생취약분야 조리시설
- 식용란 농장 출하 전 잔류물질(농약) 검사 강화
-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유통 단계까지 검사 대상 확대

국회 지적 등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 HACCP 전면 불시 평가 추진 등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 정기·조사평가 불시실시, 법령위반 업체 즉시 재평가 실시 등
-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 급식소 등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직접 납품하는 제조업체 등 점검 강화
 - 점검 대상 확대 및 사용 식재료, 완제품(간식류) 등 수거·검사 강화
- 휴게음식점, 제과점 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적용대상 확대
- 식품접객업체 조리음식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물의 재사용 기준 명확화 및 관리 강화
 - (종전) 손님이 먹고 남은 → (개정) 손님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된
-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개인 휴대반입식품, 면세점 판매제품 등 수입 식품 안전관리 강화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19년 식품안전관리 기본방향

비전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관리로 소비자 안심 환경 조성 ”

목표

- 명절, 휴가철 등 시기별 성수 식품 사전 안전관리
-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집중관리
-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등 식생활 변화에 선제 대응
- 교육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합동점검 강화

핵심전략

[기획점검]
소비트렌드 대응

-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 위생적취급기준, 온도관리기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자가품질검사, 유통기한 위·변조 등
- ▶ 프랜차이즈점·패스트푸드점
: 부적합 원료, 조리장 위생불량,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 ▶ 프랜차이즈 원료, PB제품 제조업체
: 냉장·냉동 온도 준수, 유통기한 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유통, 회수명령 위반 여부 등
- ▶ 영·유아식, 환자용식품 등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
: 제조가공기준 준수,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등

[특별점검]
위생 취약 시설

- ▶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유통기한 경과 원료 등
- ▶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 시설기준, 위생적취급기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등
- ▶ 노인·장애인·아동·산모 이용시설
: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 ▶ PC방, 스크린골프(야구), 눈썰매장 등
: 무신고, 시설기준, 위생적 취급기준 등
- ▶ 반복민원 및 고의·상습 위반업체
: 법령 재위반,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등
- ▶ 농·수·축산물 가공 업체
: 작업장 바닥 전처리, 표백제 등 유해물질 처리 등

[정기점검]
시기.계절별, 다중.다품목 시설/식품 관리

- ▶ 설·추석 명절
: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햇과일, 쇠고기, 조기 등)
- ▶ 봄·가을 신학기
: 학교집단급식소, 학교매점, 학교 주변 분식점, 문방구 등
- ▶ 봄·가을 행락철 및 하절기
: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열, 공항, 국·공립공원, 유원지, 해수욕장 등
- ▶ 가정의달
: 뷔페, 패밀리레스토랑, 결혼식장, 학교 매점 등
- ▶ 김장철
: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절임배추 등
- ▶ 성탄절·연말연시
: 케이크류, 초콜릿류 등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19년 식품안전관리 기본방향

기본 방향

- 가정간편식(HMR), 배달음식, 프랜차이즈·패스트푸드, 영·유아식(이유식) 등 다소비 식품 안전관리 강화
- 단속필요가 높은 업체, 미점검 업체 등 위해 우려 항목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위주의 집중 점검 실시
 - * 중점 점검 항목 (제조,接客, 소분·판매 공통)
 - ①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 ② 의약품, 사료용·공업용 원료 및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행위
 - ③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 ④ 영업정기 기간 중 영업 및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조 행위
 - 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 제품 판매 행위
 - ⑥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된 물 사용 행위
 - ⑦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 ⑧ 부적합 통보를 받거나 확인된 후에도 판매하는 행위
 - ⑨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폐기)한 것으로 속이는 행위
 - ⑩ 질병치료·의약품 오인·체험사례 등 허위 광고 행위
- 지자체 관내 일상점검 : 기본안전수칙 항목 위주로 점검
 - ①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 ② 지하수사용 수질검사
 - ③ 방충·방서시설 기준
 - ④ 제도가공실 위생적 관리
 - ⑤ 자가품질검사
 - ⑥ 이물 혼입
 - ⑦ 온도기준 미준수
 - ⑧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판매·조리·보관·냉장·냉동
 - ⑨ 무등록(신고) 및 무표시
 - ⑩ 음식물 재사용

- 위반사항 발생시
 - 위반사항은 시정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반복 점검 실시
 - 위반업체는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 공개
 - 반드시 3개월 이내 재점검 실시하고 재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특별 관리
 - 위반된 제품이 회수·폐기 대상인 경우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유통된 제품은 회수·폐기토록 해당 기관에 신속히 통보
 -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중 계통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업체 및 제품 정보 등을 신속히 통보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제조·가공단계 안전관리

제조·가공업소 등 안전관리

• 제조·가공업체 등 점검

- ① 식품위생법 반복 위반업소, 수출 부적합 제품(국내 유통 시) 제조·가공업소, 언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품목 및 제조업체 등 위생관리 강화
- ② 식품을 환, 분말 등으로 제조하여 유사 건강식품 등으로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중점관리
- ③ 위생관리 자율관리업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 면제 : 위생관리 자율관리업소, HACCP인증업소, 별도의 출입·검사 주기 또는 면제 등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특별관리업체 지정

- ① 식품위생법을 연 2회 이상, 최근 3년간 5회이상 위반 업체
 - 경미한 위반 사항은 제외(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실시)
 - 식품 등에 이물 혼입으로 위반된 경우 동일 제품에서 연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한정
- ② 사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를 한 업체
- ③ 위해식품을 성실히 회수하지 않은 업체(회수실적 80%미만)

• 특별관리업체 관리방법

- ① 지정일로 3개월 이내에 종전 위반사항 등 특별점검 실시

기계·기구류 안전관리

• 적용 대상업소

- 스팀(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떡, 만두 등 제조·판매 업소
- 착유기를 이용한 참기름, 들기름 등을 제조(착유)·판매 업소
- 분쇄기를 이용한 고춧가루 등 제조·판매 업소
- 출(중탕)기, 유압기 및 포장기 등을 이용한 추출가공식품, 추출식품, 액상 제품 제조·판매 업소
- 압축공기를 식품에 직접 분사하거나, 식품을 생산·제조하는 기계·기구류에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업소

• 주요 점검 사항

대상	점검 사항
스팀(증기)보일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일러 내부 물탱크 침전을 제거 등 관리여부 ○ 스팀(증기) 유도관 잔류수 배출 이행여부 ○ 보일러 주변 및 스팀유도관 등 청결유지 관리여부 ○ 보일러에 사용되는 정관재의 식품첨가물 해당 여부(스팀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제조공정에 한함)
식용유지 착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유기, 볶음기 등 작업종료 후 청소 등 관리여부 ○ 1대의 착유기로 다른 종류의 유지 착유시 충분히 청소 후 착유여부 ○ 일일 안전관리 점검표에 의한 점검여부 확인
고춧가루 등 분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 설치 여부 ○ 고추씨를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제조·행위여부 ○ 분쇄기 등 작업종료 후 청소 등 관리여부 ○ 일일 안전관리 점검표에 의한 점검여부 확인
추출기(중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출기, 유압기 등 사용하는 밸브, 호스 등 청결유지 관리여부 ○ 세척제는 「식품위생법」 등에 적합한 식품첨가물 등 사용여부 ○ 일일 안전관리 점검표에 의한 점검여부 확인
압축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축공기 여과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청결하게 유지 관리 여부 ○ 압축공기를 식품에 직접적으로 분사하는 경우 분사 공기의 식중독균 검사 여부 ○ 주기적 안전관리 점검표에 의한 점검여부 확인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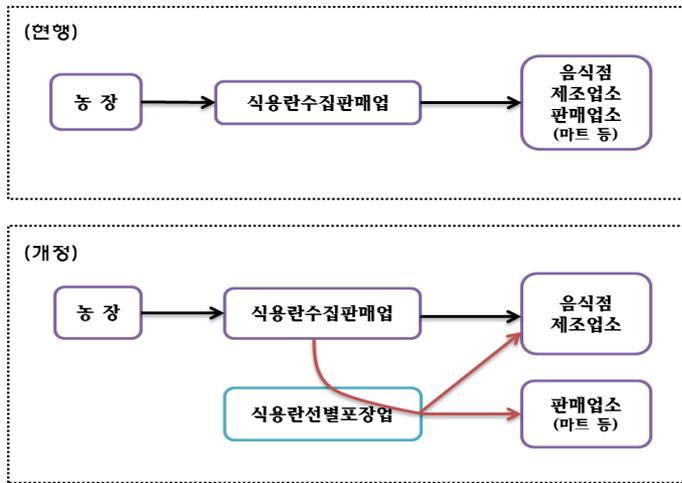
제조·가공단계 안전관리

계란(식용란) 안전관리

• 무허가 · 신고 영업행위 집중 단속

구분	담당기관	업종	정의
허가	시·도지사	식용란선별포장업 (’18.4.25.시행)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영업
신고	시·군·구청장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후 계란 유통도



• 식용란선별포장업(신설) 점검 사항

① 시설기준 준수여부

- 식용란 선별·세척·포장·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 위치 등 :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한 자가 그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시설 중 종란·달걀을 집란, 보관하는 시설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그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봄

- 작업장

- : 검란기, 파각검출기, 중량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살균기 등 선별 및 포장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일괄 작업이 가능하도록 자동화시설로 설치해야 함

* 다만, 물세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조기 설치 불필요

②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제출한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를 최종 제출일로부터 2년간 보관
-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이력 파악을 위해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최종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
-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은 색소와 섞은 후 “폐기용”으로 표시한 폐기용기에 담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선별·포장·보관해서는 안됨
- 정당한 사유 없이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의뢰하는 식용란의 선별·포장 등 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해서는 안됨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제조·가공단계 안전관리

HACCP 제도 운영

- 조사·평가 전면 불시평가 추진
 - 연초에 평가대상을 일괄적으로 공개하고, 모든 업소에 대해 불시평가 실시
 -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 즉시 평가
 - * 식중독 발생, 기준규격 위반 등 법령위반 업체는 즉시 불시평가 실시, 기타 경미한 표시사항 위반 및 영양성분 부적합 업체 등은 평가 제외
- HACCP 인증 확대 지속추진
 - 즉석섭취식품 등 8개 식품 4단계(1억 ↓ 또는 6명 ↓) 차질 없는 의무적용('20.12 시행)
 - '18년도 총 매출액 100억이상 식품제조·가공업체 전체 생산식품 의무적용('19.1 시행)
 - * 의무 시행중인 업체가 신규로 식품유형 추가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신규로 1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 가능(신청: 인증원)
 - 식육가공업 2단계(5억원 ↑) 차질없는 의무적용('20.12 시행)
 - * 식용란선별포장업 의무적용('18.4.25 시행, 시행 후 6개월 이내 적용완료)

-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3년주기) 시행
 - '14.1.1.~8.3.인증업체
 - '16.8.4.~12.31.인증업체
 - '16년 연장심사 받은 업체
-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적용
 - 평가결과 60점미만, 주요 안전조항* 위반 시 즉시 인증취소
 - * ① 원부재료검사검수 미흡, ② 지하수살균소독 미흡, ③ 작업장세척소독 미흡, ④ CCP 공정 관리미흡
- HACCP업체 압축공기 관리
 - 식품취급 시설·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및 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식품 또는 식품접촉면에 닿는 압축공기 등은 청결해야 하며, 식품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 * 주요 관리 항목 : 압축공기로 인한 세균, 오일 등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① 필터관리, ② 유지보수, ③ 식품 또는 식품접촉면에 닿는 경우 식품등급 윤활유 사용 여부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소비단계 안전관리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 배달음식점에 대한 상반기 내 전수점검 실시 (도시락, 즉발 등)
- 위반이력, 다중이용, 위생취약 등 중점 점검 실시
 - 다중이용 :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역, 유원지, 놀이공원, 대형뷔페, 프랜차이즈음식점 등
 - 위생취약 :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애견·동물카페, PC방, 스크린골프장, 감성주점 등
 - 특정계층 : 산후조리원, 노인·아동·장애인시설, 키즈카페 등
- 할랄 표시·광고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중점 점검 항목

대상	점검 사항
공통	업태를 위반하여 타 업종의 영업행위 여부 욕외 가격표시 대상 업소 가격표시 이행 여부
횃집 등 수족관	허용된 첨가물 외의 물질 사용여부 수족관 차광막 설치 여부 수족관물 교체 주기(주1회 이상) 및 청결 여부
기구	재활용 고무대야, 양파망 등 비식품용 기구 사용 음료, 생맥주 등의 공급 배관 위생관리 여부, 세척제 용도별 사용 준수 여부
식품첨가물	이산화질소를 첨가물 사용 목적(충전, 분사 등) 외 사용 여부 액체질소, 빙초산, 드라이아이스 등 접촉 시 위해우려 식품첨가물의 취급주의 액체질소 잔류여부 점검
애견·동물카페	애견·동물카페의 동물관련 시설과의 분리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뷔페음식점	남은 음식물 재사용 기준 준수 여부

< 음식물 재사용 기준 >

-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에게 진열·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등 **재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 위생적으로 취급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사용할 수 있음**
- ① 조리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상추, 쫄면,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등 야채·과일류

- ②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바나나, 굴, 리치 등 과일류, 망고, 호두 등 견과류

- ③ **건조된 가공식품**으로서,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하는 경우

망고, 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 과자류, 초콜릿, **빵류**(크림도포충전 제품 제외)

- ④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하는 경우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비추김치 등 김치류, 밥**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유통·판매단계 안전관리

유통전문판매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 등 안전관리

- 위해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
- 식품 판매업체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점검
-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신고 식품 판매 행위 점검
- 시기별 다소비식품, 집단급식용 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및 지역별 특산식품 등 유통·판매업체 관리 강화
- 중점 점검 항목
 - ① 무신고 영업 행위
 - ②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 ③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위반여부 등
 - 무허가(신고) 및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행위
 -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위·변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여부 등
 - ④ 유통관리 적정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행위
 - 부패·변질식품 판매행위
 - 냉장·냉동제품, 신선편의식품 등의 적정 보존·보관·운반·진열·판매여부 (온도계, 중심온도계 등 활용)
 - ⑤ 냉장·냉동 제품 온도관리는 기기에 부착된 온도계의 온도를 검증·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

- 중점 점검 항목
 - ⑥ 표백제, 색소 등 위해물질 처리 및 판매행위
 - 연근, 도라지, 더덕, 밤, 마늘 등에 표백제, 황산알루미늄 처리
 - 생선, 두부, 묵 등에 색소 및 보존료 처리
 - ⑦ 식품(불법 의약품 성분 사용), 주류(디부틸프탈레이트), 김치류(사이클라메이트) 등 지속 관리
 - ⑧ PB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등 점검 강화
 - 과거 위반이력이 있는 업체 중점 점검
 - 위반업체는 3개월 이내 개선여부 반드시 재점검
 - 대형 식품 판매점·백화점 PB(자체브랜드)제품, 인터넷 쇼핑물, 홈쇼핑 판매제품 등 수거검사 강화
 - 유통 벌꿀의 항생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성분 수거·검사
 -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등 수거·검사
 - ⑨ 불법 식품 및 수입식품 등 취급·판매행위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 등 제품 및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수입식품 등 판매행위 등
 - 수입식품 등의 용도(불법판매자가소비용, 외화획득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용 등)외 판매여부
 - ⑩ 영농조합법인, 로컬푸드판매점 등 생산·판매 식품의 관리 강화
 - ⑪ 온라인 전용 슈퍼마켓, 무인점포, 프리마켓 등 신종 영업의 영업신고, 보존 및 유통기준,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 주요 법령 변화 ”

주요 법령 변화

- ❖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위생법 편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입법예고, '16.4.21)
- ❖ 식품공전 전면 개편 ('16.12.29, '18.1.1시행)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18.12.19, '22.1.1시행)
- ❖ 식품첨가물공전 전면 개편 ('16.4.29, '18.1.1시행)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면 개편 ('16.6.13, '18.1.1시행)
- ❖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 장류(14년 매출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9.1.1~, 그 외- '21.1.1~)
코코아가공품류,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시리얼류 - '20.1.1~
- ❖ GMO 표시기준 개정 ('17.1.25, '17.2.4시행)
- ❖ GMO 전면 표시 (국회 입법단계)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18.3.13, '19.3.14시행)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8.12.11, '20.1.1시행) - 김치류, 절임류/소금
- ❖ HACCP의무적용 확대 : (과자 등) ~ '20.12.1, (식육가공업) : ~ '24. 12.1

“ 주요 법령 변화 ”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주요 내용 (시행일 : '20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p>➢ 김치류,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의 원산지 표시방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 :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 절임류 :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 	<p>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p>	<p>❖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9363호(18.12.11))</p>

“ 주요 법령 변화 ”

식품 표시.광고법

❖ 시행일 : '19.3.13

❖ 주요 내용

-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 상향 입법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의 금지의 유형 확대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광고를 추가
- 식품 등의 표시. 광고 내용의 실증(實證) 등
 -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표시.광고로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을 표시·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의 자율심의
 -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
 -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단체 중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그 운영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주요 법령 변화 ”

식품 표시.광고법

❖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시기준의 기준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사항의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 제품을 제조, 가공위해 수입되는 제품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 -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식품 및 축산물 - 비행기 안에 제공되는 식사는 메뉴판 형태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가능 - 바코드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 의무자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방법 (제4조) : ‘별표3.식품등의 표시방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씨는 장평 90%이상, 자간 -5%이상으로 표시
영양표시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표시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대상 - 명칭, 함량,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른 비율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6조)

“ 주요 법령 변화 ”

식품 표시.광고법

❖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광고의 기준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의 기준 (제7조) : ‘별표6.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 사항’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비전.인쇄물 등에 광고하는 경우 제품명,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함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적용 범위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종류.제조방법, 등급.품질.영양, 원재료.성분에 관한 사항 - 영업소 명칭, 상표, 내용량, 사용 정보 - 날짜에 관한 사항 - 유전자변형식품 등 - 이력추적관리 - 안전관리인증 등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내용 (제3조) : ‘별표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범위’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 의약품/건기식 오인혼동 - 거짓.과장된 표시,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의심 -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교하는 표시, 광고 등 	

“ 주요 법령 변화 ”

식품 표시.광고법

❖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제9조)		● 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 (제8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 심의 (제10조)	● 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등 (제4조) ● 표시 또는 광고 이의신청 (제6조)	● 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식품 등 (제9조) -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위해 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제15조)		●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 (제15조) - 알레르기 유발 원료 성분 미표시 - 일자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하거나 미표시

“ 주요 법령 변화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주요 내용 (시행일 : '20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용어 정의 개정 -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 ➤ ‘제조일’ 영문명 및 약자 예시 신설 - Date of Manufacture, Manufacturing Date, MFG, M, PRO(P), PROD, PRD ➤ ‘유통기한’ 영문명 및 약자 예시 신설 - Expiration date, Sell by date, EXP, E ➤ ‘품질유지기한’ 영문명 및 약자 예시 신설 - Best before date, Date of Minimum Durability, Best before, BBE, BE ➤ ‘복합원재료’ 정의 개정 - 행정관청에 품목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식품 	I. 총칙 3. 용어의 정의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7-99('17.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의 표시기준 신설 -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에”,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표현을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 	II.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8-32('18.4.26))

“ 주요 법령 변화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주요 내용 (시행일 : '20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씨(아마씨유 제외) 원재료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II . 공통표시기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7-99('17.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 면제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 추가 : 잣 - 단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의 제품명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재료명을 사용한 경우 별도 표시 생략 가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8-32('18.4.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체질소, 액체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Non-alcoholic),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시: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의 표시기준 신설 	II . 공통표시기준 3.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 금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7-99('17.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액을 환원시 식품첨가물 사용 제품에 100%를 표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 표시 - 예시) 100%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주스(산도 조절제 포함)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8-32('18.4.26))

“ 주요 법령 변화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주요 내용 (시행일 : '20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미씨(아마씨유 제외) 원재료로 사용시 주표시면에 함량 표시 조항 신설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7-99('17.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은 뿌리 이외의 부위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그 부위의 명칭을 표시하고, 2가지 이상의 부위를 함께 사용한 경우 각각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8-32('18.4.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 살균제품은 “살균제품”, 멸균제품은 “멸균제품”, 비살균제품은 “비살균제품”으로 표시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나. 식품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7-99('17.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임식품, 조림식품 - 최종 살균, 멸균 공정 제품에 한하여 ‘살균제품’, ‘멸균제품’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 에탄올 함량을 알코올 함량으로도 표시 가능 - 원재료명 중 “에탄올”을 ‘알코올’로 표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꿀류(사양벌꿀, 사양벌집꿀) -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으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 꿀입니다.” 표시 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소식품 -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함량(unit/g) 표시 의무 신설 		

“ 주요 법령 변화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주요 내용 (시행일 : '20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류(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두 함량 표시의무 신설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나. 식품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8-32('18.4.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칭명칭 표시기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가지 이상 원재료 합계량이 15%이상되어야 하는 기준 삭제 - 예시) 과일○○(사과 ○○%, 배○○% 등) 식품유형명, 즉석섭취.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표시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식품유형명, 즉석섭취.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 함량표시 제외 가능 - 예시) “○○토마토케첩”(식품유형: 토마토케첩) - 예시) “○○햄버거”, “○○김밥”, “○○순대” - 예시) “수정과○○”, “식혜○○”, “불고기○○”, “피자○○”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 가.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8-32('18.4.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소분업의 업소명 표시규정 분리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 나. 업소명 및 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7-99('17.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원재료 표시기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원재료의 명칭 또는 식품유형을 표시 - 5%미만에 해당하거나 복합원재료의 복합원재료는 명칭(제품명 포함) 또는 식품유형만을 표시 가능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 바. 원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7-99('17.12.6))

“ 주요 법령 변화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주요 내용 (시행일 : '20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제제류의 구체적인 명칭 → 고시된 혼합제제류의 명칭 ➤ 천연향료, 합성향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 예시) 천연향료, 천연향료(바닐라향), 천연향료(바닐라추출물), 합성향료, 합성향료(딸기향)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 바. 원재료명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7-99('17.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제외 대상 확대 (시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단위값 처리 규정 인정 범위 이내 - (확대) 2개 이상 공인검사 기관에서 6개월 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 아. 영양성분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8-58('18.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조사식품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 살균/살충', '감마선 발아억제/살균/살충', '전자선 발아억제/살균/살충' 표시 허용 	별지2. 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7-99('17.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글자크기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량, 영양성분 명칭,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의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규정 신설 	도3.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 주요 법령 변화 ”

축산물의 표시기준

주요 내용 (시행일 : '20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육, 수입식육, 단일 원재료로 가공한 축산물 : 제품명, 원재료명이 동일한 경우 알레르기 표시 생략 단서 추가 	제6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8-9('18.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씨(아마씨유 제외) 원재료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등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축산물의 영문 표시 및 약자 예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연월일 : Date of Manufacture, Manufacturing Date, Date of production, Production date, MFG, M, PRO(P), PROD, PRD 등 - 유통기한 : Expiration on date, Sell by date, Expiry Date, EXP, E - 위의 예시에 있지 않은 영문표시 및 약자가 수출국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나타낼 때에는 그 날짜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으로 볼 수 있음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표시적용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제조, 가공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 -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 알레르기 유발물질만 표시할 수 있음 		

“ 주요 법령 변화 ”

축산물의 표시기준

주요 내용 (시행일 : '20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원재료 사용시 명칭 외에 해당 식품의 유형도 표시 가능 ➢ 복합원재료가 5%미만,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 명칭 외에 해당 식품의 유형도 표시 가능 ➢ 기계적 회수 식육만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기계발골육' 표시하도록 개정 ➢ 일반정육과 기계발골육이 혼합된 경우 혼합비율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닭고기00%(정육 80%, 기계발골육 20%) 또는 닭고기정육 00%, 닭고기(기계발골육) 00% ➢ 아마씨(아마씨유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시 : 해당 식품에 그 함량(중량)을 주표시면에 표시 신설 	<p>별표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1. 축산물의 일반기준 사. 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p>	<p>❖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8-9('18.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란에 표시하여야 할 표시사항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법의 가축사육업에 허가, 등록된 명칭(고유번호)을 표시 '사육환경표시' 추가 - 산란일 ;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 - 산란일, 고유번호 및 사육환경번호는 함께 표시 (예시) 1004M3FDS2 ➢ [도4] 달걀 껍데기의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 신설 ➢ 산란일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란일 : 닭이 알을 낳은 날 (기존 : 생산자가 계란을 채집한 날) - 산란시점으로 36시간 이내에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 가능 	<p>별표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2. 축산물별 개별기준 가. 식용란</p>	

“ 주요 법령 변화 ”

축산물의 표시기준

주요 내용 (시행일 : '20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표시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의 표시사항 변경 금지 - 내용량,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제품명(수입계란 제외)은 변경 가능 	별표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2. 축산물별 개별기준 가. 식용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8-9('18.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의 종류 및 함량 표시기준에 함량 표시 방법 단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시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을 그대로 표시 - 햄류(캔햄류 제외), 소시지류(비가열소시지류 제외),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중 수육과 편육, 갈비가공품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 가능 - 예시) 베이컨의 원재료 배합비율 : 돼지고기 80%, 물 15%, 부재료 5% → 돼지고기 함량 : 94%(80/85 x 100) 	별표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2. 축산물별 개별기준 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즈류, 버터류를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 표시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일, 해동일, 해동 후 유통기한, 해동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 표시 - 주표시면에 “해동된 냉장(실온) 제품”이라는 표시를 ‘냉동제품’근처에 표시 -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 	별표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2. 축산물별 개별기준 라. 유가공품	

“ 주요 법령 변화 ”

'18년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식품위생법	제10~13조	'18.3.14 ('19.4.13)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18.3.13)에 따른 표시·광고 부분 삭제
	제44조	'18.12.11 ('19.6.12)	•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제한행위 명확화 및 관계공무원의 압류·폐기 근거 마련 - 제조가공 목적 보관행위 및 조리예 사용행위금지 명시
	제83조 제93조 제94조	'17.12.12 ('19.12.13)	• 형량하한제 요건 및 부당이익 환수 기준 금액 변경 - (형량하한제) 형 선고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부당이득환수) 소매가격 → 판매금액
	제75조	'18.12.11 ('19.6.12)	•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금지업소에 취업하거나 주류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 면제
		'18.12.11 ('19.6.12)	• 과태료와 행정제재처분이 이중 부과되는 품목제조보고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제외

“ 주요 법령 변화 ”

'18년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18.6.28. ('18.6.28)	• 제품관련 국내외 수상 또는 상장 표시 · 광고 전면 허용
	제36조 [별표14]		• 식품제조 · 가공업자가 제조 · 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위탁 가능한 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 및 타 법률의 제조업자(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로 전면 허용 • 식품제조 · 가공업자가 다른 업종(식품 · 축산 ·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 의약외품 · 화장품 제조업소)의 검사실 공동이용 가능하도록 확대
	제37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떨어져 판매가 가능한 식품에 축산물가공품 중 식육가공품 추가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6조 등	'18.12.31 ('18.12.31)	• 영업자가 식품등의 영업허가 등 변경 시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토록 명확화
	제61조의2		• 위생등급제 지정 대상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도 추가
	제69조의2	'18.6.28 ('19~'22)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 식품 확대 -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제89조 [별표23]	'18.6.28. ('18.6.28) '18.12.31. ('18.12.31.)	• 식품접객업소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 및 사용 시 : 영업정지 15일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 : 영업정지 15일,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 영업정지 1개월 • 보존 및 유통기준과 관련 없는 위생적 취급기준 등 경미한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 - 보존 및 유통기준(식품공전) 위반 시 : 영업정지 7일 → 온도기준 위반 : 영업정지 7일, 기타 위반행위 : 시정명령 •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비가식 원료 사용행위와 동일하게 품목제조 정지 30일로 강화

“ 주요 법령 변화 ”

'18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주요 개정내용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제3조	'18.12.31. ('18.12.31.)	•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해당 영업소를 방문하여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가능
	별표	'18.3.23 ('18.3.23)	•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검진일'로부터 1년마다로 명확화

“ 주요 법령 변화 ”

'18년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18.3.13 ('19.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18.3.13., 시행 '19.3.14.)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법 제6조, 제32조) 및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과 벌칙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
		'18.12.11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 이물신고 제도 도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 법률 상향 입법화함
축산물위생 관리법 시행령		'18.4.24 ('18.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용란의 자가검사 대상자는 달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서 직접 달걀을 수집·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로 명확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범위 마련 식용란선별포장업 변경허가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마련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공표 게재기간을 내용별(회수·폐기, 부적합 축산물, 행정처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함

“ 주요 법령 변화 ”

'18년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축산물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18.4.25 ('18.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에 따른 영업에 필요한 하위법령 마련(위생관리기준, 위생교육,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등) • 식용란의 검사기준(별표 4) 위임근거 마련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기준(별표5) 위임근거 및 검사기록서 기록 · 보관 의무 마련 • 식용란의 위탁검사 근거 마련 • 식용란 출하시 거래명세서(산란일 · 세척방법, 냉장보관 여부, 사육환경, 산란주령 등 정보 포함) 발급의무 • 식용란의 생산농가 출입 · 검사 권한 마련 • 제품과 관련한 수상 사실 표시 · 광고 허용 • 식용란의 재포장 허용 • 달걀의 껍데기 표시 관리 강화(표시사항 위 · 변조: 영업소 폐쇄,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 미표시: 영업정지 15일(1차))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식용란 안전 · 위생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으로 유통 · 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 · 포장 처리되도록 함(★시행: '19.04.25) - (예외 인정) ① 해외 작업장에서 선별 · 포장 처리된 수입 달걀 ②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로서 HACCP인증을 받고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달걀 • HACCP 농장의 인증취소 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기준에서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잔류방지 방안을 수립 · 이행하지 않고 잔류 예방을 위한 공정(출하 포함)에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 제품과 관련 상장 받은 사실은 표시 · 광고 허용

“ 주요 법령 변화 ”

'18년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축산물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18.6.29 ('18.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영업 허가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처리·가공·포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수질검사성적서 제출 • 차량을 이용한 식육판매업자 범위를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모든 축산 관련 사단법인으로 확대 •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구역 내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여러 대 설치하는 경우 영업 신고 시 사물인터넷 자판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제출한 경우 일괄 영업신고 수리 - 사물인터넷 자판기만으로 밀봉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시설기준 설치 예외 인정. 다만, 자판기 외부에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등 설치 및 유통기한, 중량 등 제품정보 외부 표시 의무 -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유통기한·100그램당 가격 및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표시 의무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장소제한 없이 반품·교환품 보관시설 설치 가능
		'18.9.5 ('18.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식육가공업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동육 공급을 요청한 경우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되거나 해동 중인 상태로 공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동 시작시각, 용도, 주의사항 등 해동에 관한 정보 표시 -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해동 상태로 공급받은 사실 원료수불서류에 기록
		'18.12.예정 (공포 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 축산물 영업 허가·신고 요건 완화

“ 주요 법령 변화 ”

'18년 수입식품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수입식품법		'18.3.14 ('19.4.13)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18.3.13)에 따른 표시·광고 부분 삭제
	제5조	'18.12월 예정	• 수입신고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 (7일 전까지 → 전까지)
	제17조	'18.12월 예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 보수교육 미수이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관리책임자가 이수 가능하도록 개정
	제20조	'18.12월 예정	• 국민 건강상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검사 없이 해당제품 신고수리보류 조치
	별표 13		•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소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판매금액)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8조	'18.2.9. ('18.2.9)	• 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승인시에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조원료 및 식용향료의 경우,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
	제35조		• 수입건강기능식품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 이상이 되는 영업자를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에 포함
	제46조 및 제47조		• 유통기한·중량 위변조 행위 및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광고 행위에 대하여 처분 기준 강화 • 통관단계 내용량의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등
	제31조	'18.12월 예정	• 조건부 신고수리 제품의 보관장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개정
	제35조		• 수입 임신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까지 이력추적제 의무화 대상으로 추가
	제25조		• 식품용으로 수입된 농·임산물을 한약으로 유통·판매하지 않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 수입식품등 보관업자에 대해 검사진행중인 제품 무단 반출 금지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 조건부 신고수리된 제품은 다른 제품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제32조		• 수입건강기능식품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요건 완화
	서식		• 수입돼지고기도 이력번호 기입하도록 수입신고서 서식 개정

“ 주요 법령 변화 ”

'18년 건강기능식품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건강기능식품법		'18.6.12 ('18.12.13)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18.4.17 ('18.4.17)	•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으로 요구되는 학력 · 경력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문구 정비
			• 식품산업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
			• 고등학교 졸업자의 필요 경력을 8년에서 7년으로 변경
			• 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으로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 종업원의 교육내용 준수 여부 지도 · 감독,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안전성 · 품질 등에 대해 개선 요청 등
			• 연간매출액이 클수록 업체의 1일당 과징금 부과비율을 높이도록 개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개선

“ 주요 법령 변화 ”

'18년 건강기능식품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18.9.28 (18.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변경신고 시 영업 시설의 배치도를 제출 서류에서 삭제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 교육내용에 표시·광고 추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른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등 운영 실태, 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준서·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의 운용 및 기록유지,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 등 조사·평가 사항 규정 - 2017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19년 12월 1일 / 10억 미만: 2020년 12월 1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하는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위탁 제조시설의 관리상태 점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는 모든 제조 공정 또는 원료 칭량(稱量) 및 포장 공정을 제외한 모든 제조 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위탁 제조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함 법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인정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에서 제외 법 제18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자와 제조업자를 함께 처분하도록 규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로 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 행정처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선하고,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도록 규정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위반사항에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경우'를 추가
		'18.12.27 (1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동일한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다른 원료 또는 성분의 첨가 없이 기준·규격 항목의 검사가 완료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그대로 소분만 하는 경우에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기준·규격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연간 단속 계획

월	점검명	대상	점검기간
1	○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점검	스키장, 눈썰매장, 아이스링크 등 조리·판매	‘18.12.26 ~ 1.4
	○ 설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합동점검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수산물(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 제조·판매업체	1.14 ~ 1.18
2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점검(1차)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2.7 ~ 2.20
	○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 점검	영·유아식, 체중조절용식품, 영유아곡류조제식, 환자용식품 등	2.18 ~ 2.22
	○ 상반기 탁·약주 제조업체 점검		2.18 ~ 2.22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1차)		2.25 ~ 2.27
3	○ 봄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소 등 합동점검	학교급식·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대형식재료 납품업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체	3.4 ~ 3.12
	○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지도점검	과자류, 김치류 등 식품제조업체 / 인삼, 비타민 등 건기식제조업체(1차)	3.11~3.22
	○ 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철도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푸드트럭 등 조리·판매업체	3.18 ~ 3.22
	○ 지하수 부적합 주류 제조업체 등 점검	수질검사 부적합 업체, 검사명령제 대상업체 등	3.25 ~ 3.29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연간 단속 계획

월	점검명	대상	점검기간
4	○ 가정간편식 제조 · 판매업체 합동점검	도시락,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 제조·판매	4.1 ~ 4.5
	○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집단급식소(청소년수련원 시설), 김밥, 도시락제조업체 등	4.8 ~ 4.12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수거 · 검사		4.15 ~ 4.19
	○ 액란제품 제조업체 점검		4.17 ~ 4.19
	○ 가정의달(어린이날 등) 대비 제조 · 유통 · 조리업체 점검	뷔페, 패밀리레스토랑, 결혼식장 등 식품접객업체,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제조 · 유통업체, 학교매점 등 조리 · 판매업체 등	4.15 ~ 4.26
5	○ 수산물 유통 · 판매업체 점검		5.7 ~ 5.10
	○ 위생취약분야 조리 · 판매업체 점검	키즈카페, 애견 · 동물카페, PC방, 스크린골프(야구)장 등	5.13 ~ 5.17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점검(1차)	가공식품 및 농 · 수산물 등	5.13 ~ 5.17
	○ 분쇄가공육제품 제조업체 점검		5.13~5.31
	○ 하절기 대비 맥주(소규모 포함) 제조업체 점검		5.20 ~ 5.24
6	○ 다빈도 이상사례 신고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1차)		6.3 ~ 6.14
	○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조리 · 판매업체 점검		6.10 ~ 6.14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합동점검(2차)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6.10 ~ 6.14
	○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점검		6.10~6.28
	○ 과실주, 일반증류주 제조업체 점검		6.17 ~ 6.21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연간 단속 계획

월	점검명	대상	점검기간
7	○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합동 교차점검	고속도로휴게소, 해수욕장, 워터파크, 커피, 주스 프랜차이즈 등	7.1 ~ 7.12
	○ 하절기 대비 주류 유통·판매업체 점검	직매장, 주류 도·소매업 등	7.15 ~ 7.19
	○ 프랜차이즈 원료 및 PB제품 제조업체 점검	빵류, 면류, 즉석조리식품 등	7.22 ~ 7.26
8	○ 추석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합동점검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수산물(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및 온라인 신선농산판매업소의 거점 물류센터 등	8.21 ~ 8.27
	○ 가을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소 등 합동점검	학교 급식·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대형식재료납품업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체	8.29 ~ 9.6
9	○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점검		9.2 ~ 9.6
	○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교차 점검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철도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푸드트럭 등 조리·판매업체	9.23 ~ 9.27
	○ 과실주, 리큐르 제조업체 점검		9.23 ~ 9.27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연간 단속 계획

월	점검명	대상	점검기간
10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점검(2차)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9.30 ~ 10.11
	○ 사회특정계층 대상 식품취급업소 점검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10.14 ~ 10.18
	○ 하반기 탁·약주 제조업체 점검		10.14 ~ 10.18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수거·검사		10.21 ~ 10.25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등 점검	약초시장 등의 농임산물 판매업소	10.23 ~ 10.25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합동점검(3차)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10.28 ~ 11.1
	○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식품 접객업체 점검		10.28 ~ 11.5
11	○ 다빈도 이상사례 신고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2차)		11.1 ~ 11.8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2차)		11.1 ~ 11.8
	○ 김장철 성수식품 합동 점검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 식품제조·판매	11.11 ~ 11.15
	○ 식육포장처리업체 지도·점검		11.11 ~ 11.22
	○ 연말연시 대비 소주 제조업체 점검		11.25 ~ 11.29
12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합동점검(4차)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12.2 ~ 12.6
	○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빵류 등 제조·판매업체 점검	빵류(케이크), 초콜릿류 등 제조·판매업체	12.9 ~ 12.13
	○ 동절기 주류 유통·판매업체 점검	직매장, 주류 도·소매업 등	12.9 ~ 12.13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주요 단속 결과

[설 대비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점검]

- 일정 : '18.1.25 ~ 2.2
- 대상 : 한과류 등 / 식육세트 등 축산물 /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 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 제조.판매

년도	'18	'17	'16	'15
점검 업체수	3,561	3,120	3,844	5,165
건강진단 미실시	41	49	47	33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6	43	30	30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3	16	25	27
표시기준 위반	15	18	22	35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22	11	-	33
시설기준 위반	-	7	26	2
보존기준 위반	-	3	24	10
원료수불서류,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	-	-
무등록.무신고 영업	-	-	-	3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	-	-	29
기타 :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위생교육 미실시, 원료수 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58	51	43	62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주요 단속 결과

[봄 신학기 대비 합동점검]

- 일정 : '18.3.2 ~ 3.12
- 대상 : 학교급식.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대형식재료 판매업체, 분식점 등 조리.판매

년도	'18	'17	'16	'15
점검 업체수	9,056	9,100	7,939	7,725
시설기준 위반	8	26	23	23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	6	10	27	26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	6	18	9
건강진단 미실시	-	2	3	4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2	-	-
표시기준 위반	7	-	6	5
기타 (기타 : 보존식 미보관, 수질검사 부적합, 거래내역 미보관 등)	1	7	9	13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주요 단속 결과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합동 교차점검]

- 일정 : '18.4.2 ~ 4.6 / 10.15 ~ 10.19
- 대상 : 도시락,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 제조·판매업체

구분 / 년도	제조/접객업	접객업	제조업		
	'18	'17	'17	'16	'15
점검 업체수	5,076	3,528	82	648	56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	13	7	9	21
건강진단 미실시	34	12	-	9	8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	13	7	-	8	5
시설기준 위반	8	7	-	7	12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	2	-	-
보존기준 위반	-	-	1	-	-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	-	1	-	-
표시기준 위반	-	-	-	5	1
기타	30	-	24	-	-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주요 단속 결과

[추석 대비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 점검]

- 일정 : '18.9.3 ~ 9.11
- 대상 :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수산물(과일.생선 등 제수용품) 제조.판매

구분	'18	'17	'16	'15
점검 업체수	5,252	3,029	2,537	2,847
무등록.무신고 영업	-	-	-	1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	-	-	1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1	49	54	43
건강진단 미실시	35	32	29	27
표시기준 위반	14	16	12	18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6	16	6	10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7	15	20	7
보존기준 위반	-	6	3	8
시설기준 위반	9	1	7	7
원료.생산.판매 미기록	22	-	-	-
기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위생교육 미실시, 원료수 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6	44	40	47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주요 단속 결과

[김장철 성수식품 지도.점검]

- 일정 : '18.11.19 ~ 11.23
- 대상 :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 식품제조.판매업체

년도	'18	'17	'16	'15
점검 업체수	1,948	1,826	2,543	3,477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3	32	31	20
원료수불서류,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7	27	19	-
건강진단 미실시	46	22	35	30
표시기준 위반	34	20	-	3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9	14	12	12
시설기준 위반	4	6	21	20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	6	-	-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	3	5	5	3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	-	-	26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	-	-	1
보존기준 위반	-	-	3	-
수질검사 미실시	-	-	-	2
기타	6	-	5	-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주요 단속 결과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합동 점검]

- 일정 : '18.12.10 ~ 12.14
- 대상 : 빵류(케이크), 떡류, 초콜릿류 등 제조.판매업체

구분	'18	'17	'15
점검 업체수	2,898	1,427	250
건강진단 미실시	24	16	5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	14	17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9	7	7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	3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	6
시설기준 위반	1	-	3
표시기준 위반	2	-	3
보관기준 위반	-	-	2
품목제조 미보고	-	-	1
기타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시설 멸실, 영업장 변경신고 미실시 등)	2	9	3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주요 단속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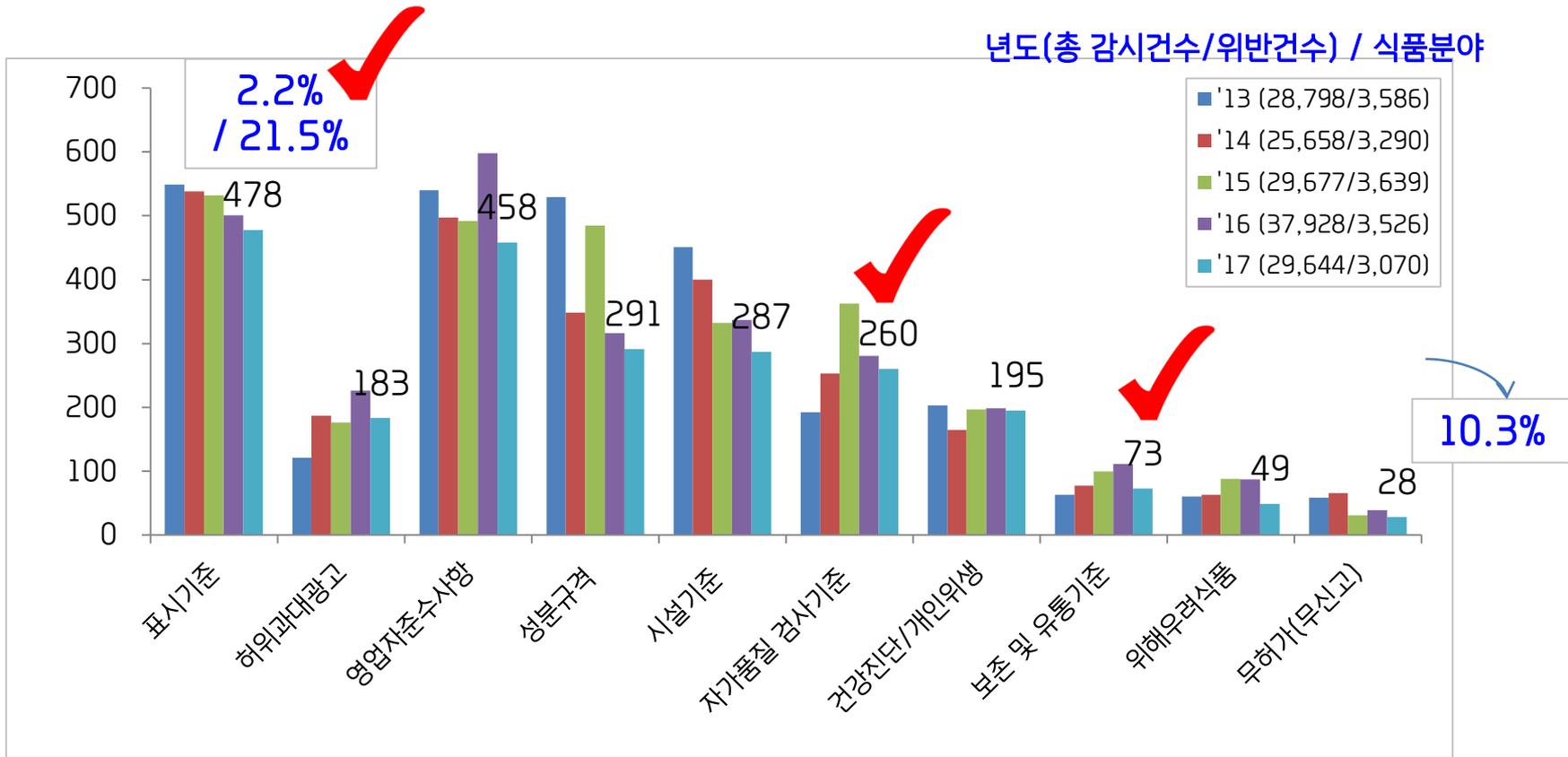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점검]

- 일정 : '18.12.26 ~ 12.28
- 대상 : 스키장, 눈썰매장, 아이스링크 등 조리.판매업체

구분	'17	'16	'15
점검 업체수	392	632	129
무신고영업	10	-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	20	1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	-	-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	-	-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	-	7	2
자가품질검사 미 실시	-	6	-
종사자 건강진단 미 실시	-	-	5
표시기준 위반	-	5	-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	-	3
시설기준 위반	-	-	2
보존식미보관	-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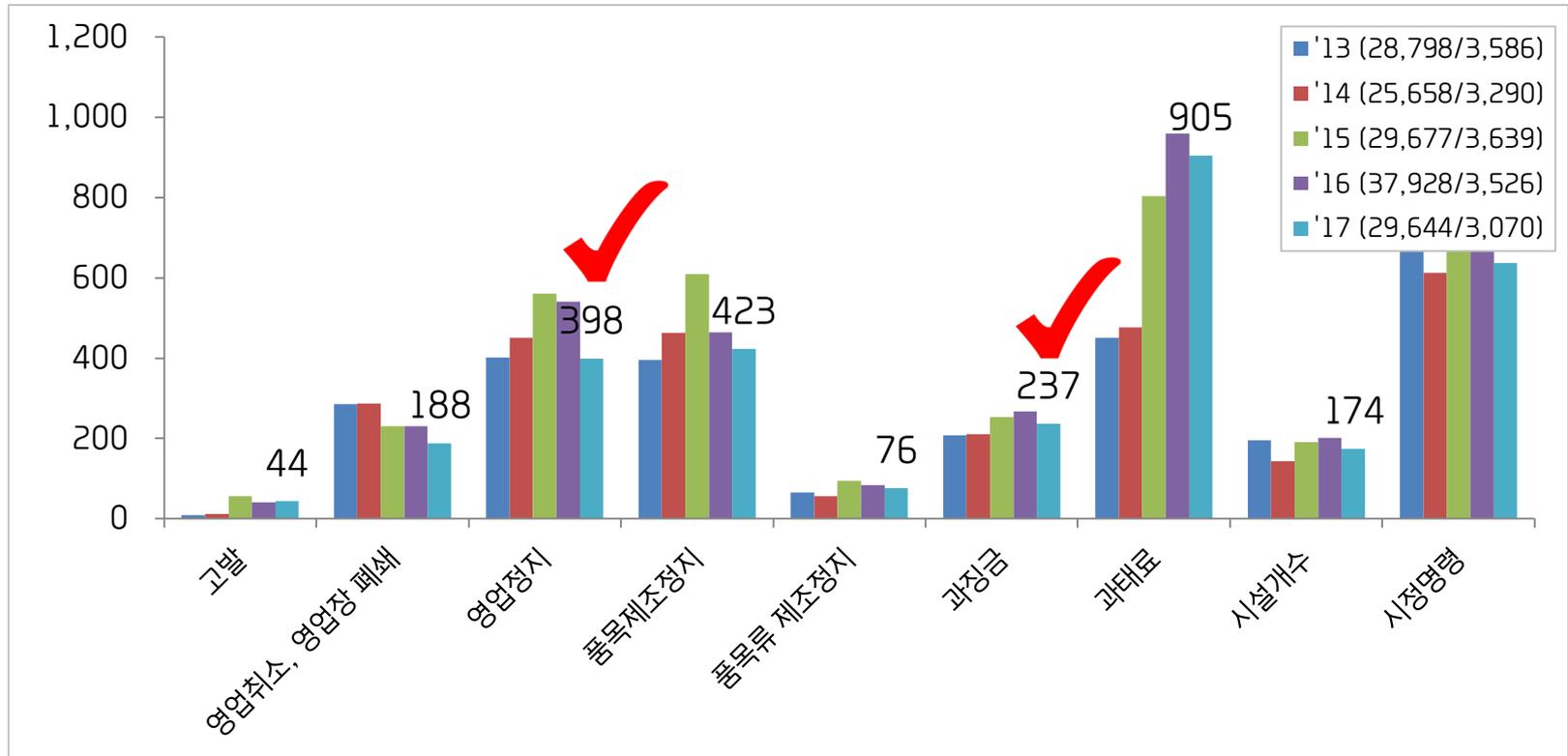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단속 결과 추이 _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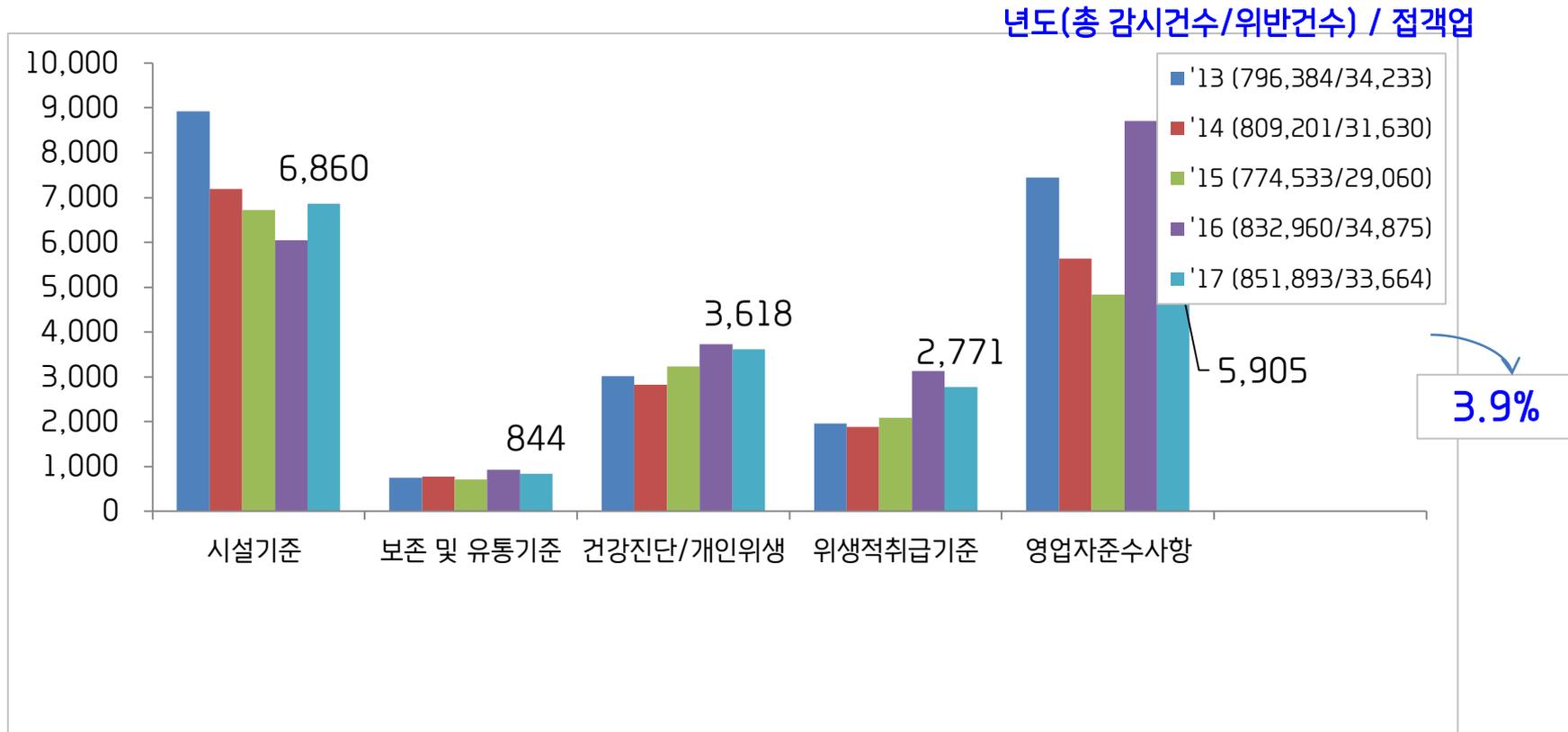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단속 결과 추이 _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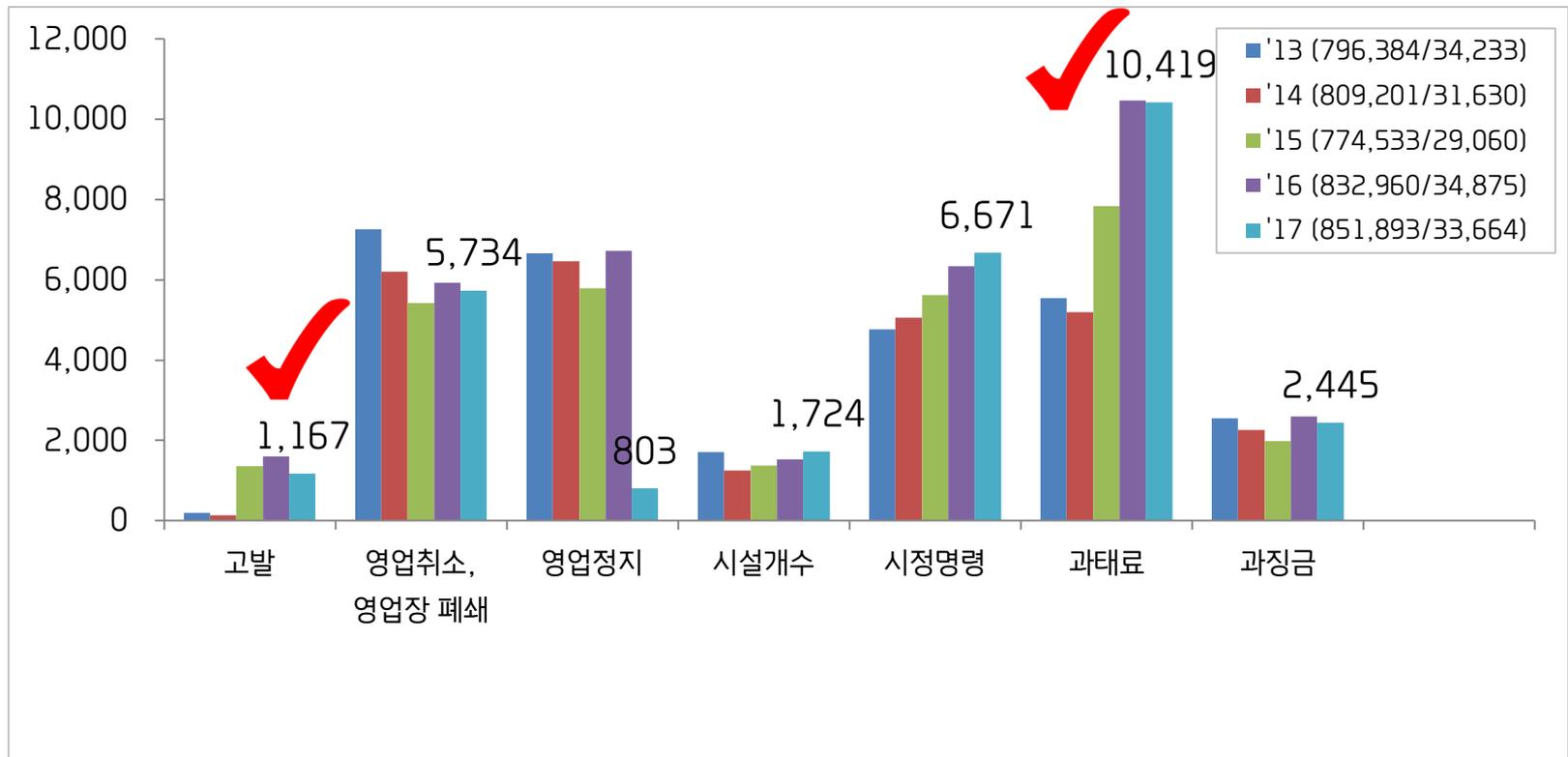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단속 결과 추이 _接客업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단속 결과 추이 _接客업



“기타 참고사항”

행정처분 차수 적용 지침



- 위반사항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진행 중 같은 위반사항의 재 적발기간(① ~ ③)에 따른 행정처분
 - ① 기간에 같은 위반행위 적발 시 동일 건으로 처리
 - ② 기간에 같은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 2분의 1씩 더해서 처분
 - ③ 기간에 같은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이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차수 적용